

『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2월 1일

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최 윤 구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추모공원(가칭)이 2016년 하반기 중 개원 예정임에 따라 화장 시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공설묘지 및 공설승조당 운영 관련 법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이 반영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,
- 장사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구미추모공원, 구미시공설승조당, 유택동산 등

○ 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구미추모공원 사용료 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	사 용 료		비 고
			관 내	관 외	
화장시설	일반 사체	15세 이상(1구)	100,000	600,000	
		15세 미만(1구)	80,000	350,000	
	죽은태아(1구)		40,000	170,000	
	개장유골(1구)		60,000	250,000	
유택동산	1구		10,000	10,000	

- 옥성면주민 구미추모공원과 유택동산 사용 시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

○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(안 제11조)

-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사용허가 취소 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

○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규정(안 제15조)

-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가능

○ 송조당 봉안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19조)

-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부모·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
-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○ 송조당 사용기간 단축(안 제20조)

구 분	최 장 사용기간	최 초 안치기간	안치연장		비 고
			기간	횟수	
기준	60년	15년	15년	3	
변경	45년	15년	15년	2	△15년

○ 기존 조례 폐지(안 부칙 제2조)

- 구미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
- 구미시공설송조당 설치 및 사용 조례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
- 「민법」 제32조 및 제1000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신 정 순

○ 본 조례안은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미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에서 “장사시설”, “구미추모공원”, “유택동산”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2016년 하반기 개원예정인 구미추모공원(가칭)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·반환 기준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장사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공설송조당의 봉안대상, 사용기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구미추모공원(가칭)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하려는 안으로,
- 구미추모공원 사용료를 화장시설의 공익성 및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전국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,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시 동의 의결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,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, 사용권의 승계에 관한 사항, 사용권한의 취소 및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,
- 그동안 타 지자체 소유의 장묘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높은 사용료를 부담해 왔던 우리 시민의 혜택은 증가하고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,
- 구미추모공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구미시 장사시설의 종합적 운영·관리를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